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홍국표 의원입니다.
- ☐ 본 의원 외 33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며, 서울의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부족과 기술 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재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제도
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의2을 신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
적인 시책 수립과 보호·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적 책임과 이행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
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를 신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은 서울시 경제는 물론 일자리를 유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도시형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